

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4항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7조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1항제5호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(피고)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0. 14.

파 주 시 장

1. 공고제목: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10. 14. ~ 2026. 10. 29. (15일간)
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성명(상호)		주소	판결확정일	비고
경 기91자5270 (KMFHA17GPNC 061240)	양도인	에스에이치물 류 주식회사	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***	2026.8.12.	
	양수인	이원호	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***		

4. 공고내용: 양수인께서는 공고기한 내 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,
자동차 검사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
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5. 문 의 처: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(☎031-940-4795). 끝.